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(안)



성 북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 번호 30 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17 발의자 : 송대식 의원 외 10 인

(송대식, 안향자, 유경상, 이인순, 김일영, 조민국, 박학동, 윤만환, 김원중, 이광남, 오중균)

1. 제안이유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의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·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,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북구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3조).
- 다.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의 설치·운 영 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라. 공익신고의 처리, 공익신고자등의 보호, 보상금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명시함(안 제5조~안 제7조)
- 마. 공익신고자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자호보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8조~안 제10조)
- 바.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6조~안 제19조)
- 사.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, 민간협력 강화, 표창의 수여, 민원사 무처리 특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0조~안 제2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□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·지원함으로써,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익침해행위"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- 2. "공익신고", "공익신고등"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- 3. "공익신고자", "공익신고자등"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4. "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"(이하 "우수기업"이라 한다)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.
- 5. "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"(이하 "환경조성사업"이라 한다)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.
- 6. "공익신고 보조금"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 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처리,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

-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,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

제4조(공익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공익신고의 처리) ①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- ②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,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공익신고자등의 보호) ①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 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

안내하여야 한다.

④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상금 지급신청 안내) ①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·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.

제3장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

제8조(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) ①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,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2.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- 3.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·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워에 관한 사항
- 4.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
- 7.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- 제10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②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인사중 민 간 위원으로 한다.
-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-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한다. 다만 사생활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- 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 ②위원장이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
-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한다.
- 제13조(위원의 해촉) ①구청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

수 있다.

- 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.
- 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.
- 3. 그 밖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.

제14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.
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

제16조(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)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- 1.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
- 2. 공익신고 접수·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
- 3. 공익신고 접수·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
- 4.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
- 5.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
- 6.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
- ②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7조(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) ①구청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

- 일정기간 세무조사, 소방·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③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- ④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 행할 수 있다.

제18조(공익신고자 호보 환경조성사업 선정) ①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9조(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)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보 칙

제20조(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) ①구청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, 공익신고의 상담·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.

제21조(민간협력)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.

- 1. 지역 내 기업, 경제단체,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·운영
- 2.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,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
- 3.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

4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

제22조(표창의 수여)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 무원, 개인,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23조(민원사무처리의 특례)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자료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
제2조(정의)

- 1. "공익침해행위"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공익신고"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공익신고등"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공익신고자"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"공익신고자등"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익신고)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.

- 1.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2.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(이하 "조사기관"이라 한다)
- 3. 수사기관
- 4. 위원회
- 5.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

제11조(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), 제12조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), 제13조(신변보호조치), 제14조(책임의 감면 등), 제15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,제16조(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), 제17조(보호조치신청), 제22조(불이익조치 금지 신청),

26조(보상금)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